

타당성 평가대행 실적보고서				
등록번호		등록일		
대행자명		소재지		
평가대행 실적				
사업명	사업장위치	사업자	사업규모	대행비용 (백만원)
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 제29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년도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을 제출합니다. 년 월 일 평가대행자 (서명 또는 인) 교통투자평가협회장 귀하				
※ 첨부서류: 용역실적 증명서 또는 준공확인서 사본 1부				